

약국제제지정

[시행 2015. 11. 1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-84호, 2015. 11. 11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(의약품정책과), 043-719-2608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약국제제의 지정) 약국제제의 지정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5-84호,2015.11.1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